##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07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주민참여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참여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수익을 주민간 공유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되었음. 그간 주민참여사업 개소 수가 증가해 왔으나, 발전원 등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접주민 및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우대 혜택이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참여사업 진행시 일정 비율 이상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 기준 설정 및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여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는 한편, 발전원별주민참여에 따른 수익률 차이를 고려하여 원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접주민·농어업인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현재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고시 <별표2>의 비고를 통해 규정 중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2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규율 사항증가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를 신설
- 나. 참여대상 주민 등의 범위에 농축산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 범위 재편·확대 (안 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별표2의2 신설)
  - 농·축산인을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을 통한 참여를 고시에 명문화하면서 그 범위를 제도취지에 맞게 구체화
  - 발전원별로 참여대상 지역의 범위를 조정, 대규모 발전사업 (100MW 이상)에 대한 참여대상 지역의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 속한 행정리·통을 참여 대상 지역의 범위에 포함

- 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기준 조정 (안 제7조의2 제4항,제5항 및 별표2의3 신설, 별표2 비고 제16호 개정)
  - 더 많은 주민 등이 투자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가중치 부여구간을 세분화하고 투자금 기준을 1인당 비율 기준에서 세대당 금액기준으로 변경
  - 주민참여형 사업의 혜택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인접주민·농축산어 업인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시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의 참여 비율 반영
- 라. 수익의 기준·절차·내용 구체화 (안 제7조의3 신설)
  - 인접주민 등에 대한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시 우대 등 수익의 기준·내용을 마련하고, 추가 가중치 부여 및 주민의 전출·사망 등에 따른 가중치 재산정·재부여를 위한 절차 마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82, 5385
- 이메일: pamoiel2@korea.kr, daeun349@korea.kr
-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u>&lt; 신 설 &gt;</u>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다. 이 때,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 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모양 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 다고 지역에서 공급인 또는 「축산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법인 4.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조합, 어촌계 등 유관단체를 통해 참여하는경우를 포함한다)
< 신 설 >	③ 참여주민등은 최소 5인 이상이 참 여하여야 하고, 투자금은 다음 각 호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주민등이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에 따른 금액이하로 한다. 이 때, 발전사업자는참여주민등과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이 한 전단에 따른 투자금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자 중 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대당 3천만원 이하으로 제4항제1호의 자 및 제2항제2호의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대당 4천5백만원 이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주민등(이하 "인접주민등"이라 한다)의 주민참여금액은 전체 참

현 행	개 정 안
	여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퍼센트 미 만인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 만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삭 감하여 부여한다. 1.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 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해상풍 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 다)
	제7조의3(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 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중치 수익 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7조의2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주민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 등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② 참여주민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제1 6조에 따라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 행	개 정 안
L - 6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 간 참여주민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 (발전사업자가 참여주민등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배분·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끝다) 2. 전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 3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사업자가제2항에 따라 참여주민등을 추가 모집한 이후에도 주민참여사업에 따른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가중치 축소 사유가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라 공급인증서가중치를 재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유예기간 동안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별 자격· 투자액, 인접주민등에 대한 우대사항, 수익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함께 보관·관리하며, 정산시 세대당 사망·전출 등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보관·관리할 정보의종류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가중치 재산정등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

현 행 7	H >	정 '	안
-------	-----	-----	---

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워별 가중치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16. 제7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 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 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 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 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 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 를 적용한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 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 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 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 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 에 속하는 읍 • 면 • 동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 로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 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 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 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 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요건을 만족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총사업 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 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 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가중치 적용기		벽용기준¹ <sup>)</sup>
구분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최종 가중치	(최종 가중치
이상 태양광	부여 값) + 0.1	부여 값) + 0.2
3,000kW	(최종 가중치	(최종 가중치
이상 풍력	부여 값) + 0.1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 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u>자기</u> <u>자본 및 총사업비</u>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 우 우대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기준 <sup>1)3)</sup>			3)
구분	500kW 0)	상 태양광	3,000kW	3,000kW
, =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이상 육상풍력	이상 해상풍력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	루여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시업비의 4% 이상	(최종	(최종	(최종	(좌 기중치 부여 값) + 0.3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 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u>총사업비</u>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

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 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3) 제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인접주민등 의 주민참여금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아래 수식에 따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차감하여 부여

주민참여형추가가중치최종값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 구간별주민참여형추가가중치  $\frac{0 \, \mathrm{d} \, \mathrm{TP} \, \mathrm{Fe} \, \mathrm{J} \, \mathrm{SP} \, \mathrm{TP} \, \mathrm{TP}$ 

현 행 개 정 안

## < 신설 > : <별표2의2>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발전원 (설비)	발전사업 설비용량	지역의 범위	
태양광	500kW 이상 100,000kW 미만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पाउँच	100,0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육상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풍력 100,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3,000kW 이상 100,000kW 미마 2km 범위가 속하는 읍·면·동 2.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섬이		2.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섬이 속하는 읍·면·동 3.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	
풍력	100,000kW 이상	<ol> <li>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내륙 2km 범위가 속하는 시・군・구</li> <li>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섬이 속하는 시・군・구</li> <li>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 이 속하는 시・군・구</li> </ol>	
송변전 설비	-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통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2.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3. 15만 4천볼트 변전소 :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이내의 지역	

#### 비고

- 1. 섬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을 말하며, 육지와 연결된 기간 산정 시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 한다.
- 2. 송전선로가 유인도(有人島)를 통과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최초로 통과하는 유인 도(有人島)를 양육지점으로 본다.
- 3.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건설되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내 해당 공동접속설비를 공유하는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 < 신설 > : <별표2의3> 인접지역의 범위

발전원 (설비)	발전사업 설비용량	인접지역 범위	
태양광	500kW 이상 100,000kW 미만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육상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	
풍력	100,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해상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1.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 위치한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내륙 2km 범위가 속하는 행정리·통 2. 각 발전기 반경 5km 내에 위치한 섬 3.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한 행정리·통과 해당 행정리·통과 연접한 행정리·통(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행정리·통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력 100,000kW 이상		1.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 위치한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내륙 2km 범위가 속하는 법정리 · 법정동 2. 각 발전기 반경 5km 내에 위치한 섬 3.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 · 법정동과 해당 법정리 · 법정동과 연접한 법정리 · 법정동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리 · 법정동 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 비고

- 1.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라 행정리가 인접지역이 되는 경우로서 인접지역인 행정리가 2곳 이상의 법정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며 해당 행정리의 세대수가 법정리의 세대수보다 많은 때에는 법정리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동이 인접지역이 되는 경우로서 인접지역인 법정동이 2곳 이상의 행정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해당 법정동의 세대수가 행정동의 세대수보다 많은 때에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2. 섬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을 말하며, 육지와 연결된 기간 산정 시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 한다.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섬의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해당 섬 전체를 인접지역으로 본다.
- 3. 송전선로가 유인도(有人島)를 통과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최초로 통과하는 유인 도(有人島)를 양육지점으로 본다.
- 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건설되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내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u>&lt; 신 설 &gt;</u>	부 칙 <제2023- 호, 2023. 2.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2의 비고 제16호,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양광발전사업 및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2023년 4월 1일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2의 비고 제16호,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의 개정 규정은 발전사업의 허가 시점을 불문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급인 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